


# 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거30500-25	(전화: 731-6377)	시행상 특별취급
보존기간	영구·운영구. 10.5.②.1.	시 장	
수신처 보존기간	3년	<div style="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K 9/19</div>	
시행일자	'90. 7. 20		
보조 기 관	도로국장 전길 도로계획과장 <del>김영구</del> 시설계획계장 <del>이덕수</del>		
기안책임자	이덕수(박찬학)	경 유 수 신 참 조 각 안 참 조	발 신 명 의 
제 목	건설기술 용역사업 집행 계획 공고		
(제 1 안) 내부결재			
제목 : 동전 <div style="float: right; border: 2px solid black; border-radius: 50%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                    공사공고 1990. 7. 20 제 433호                 </div>			
1. 우리시에서 '90예산 사업으로 시행 계획중에 있는 도시고속화 도로 내부 순환선(정릉천변도로) 용역 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 권령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별첨 공고문(안)같이 동사업의 집행계획을 시보에 게재 공고하고자 합니다.			
첨부 : 1. 공고문(안) 1부. <div style="float: right; 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                     원본대조필                      직자방도취급                      정밀추천함                 </div>			
2. 집행계획 공고의뢰 공문서 1부.			
111			

(제 2 안)
수신 : 용보계획담당관 <i>20550-21</i> 발신 : 도로계획과장
제목 : 시보 게재 의뢰
1. 별첨 공고문(안)을 시보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게재건명 : 건설기술 용역 사업 집행 계획
나. 게재구분 : 공고
다. 법적근거 :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
라. 게재내용 : 별첨 공고문(안) 참조
첨부 : 공고문(안) 2부.
(제 3 안)
수신 : 기술심사담당관 <i>20550-21</i> 발신 : 도로계획과장
제목 : 동 건
1. 우리시에서 '90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기술 용역 사업에 대하여
별첨과 같이 추가 공고 의뢰하고 그공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 :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공문 사본 1부. 끝.
112

(제 4 안)

수신 : 종합건설본부장

발신:시장

참조 : 조경부장

제목 : 동건

1. 종건 조30354-608(90.7.18)호와 관련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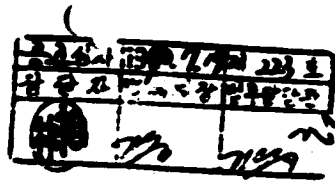
2. 위대호와 관련 별첨과 같이 도시고속화도로(정통전변도로)에 대하여 건설기술

용역사업 집행계획공고물 하였기에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.

첨부 :1. 공문사본1부. 끝.

113

서울특별시 공고 제 433 호



건설기술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(안)

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 
건설기술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0. 7 . 20 .

서울특별시 장 고 건

1. 용역명

정릉천변 (성동교 - 마장교 - 하월곡동)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 설계

2. 용역사업 시행청 : 서울특별시

3.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

가. 사업 목적

본 사업은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(내부순환선)의 일부구간으로 정릉천  
변에 연한 남북간 도시고속도로 구축으로 기존도로의 교통량을  
분담하고, 북부간선, 강변북로 및 올림픽도로와 연계 교통 처리를  
극대화시키기 위함

나. 대상구간 : 정릉천변 (성동교 - 마장교 - 하월곡동)

다. 사업기간 : 1990. - 1991. 12

4. 총 사업비 당해년도 예산규모

가. 총사업비 : 1,400 백만원

나. 90 사업비 : 1,400 "

5. 입찰 예정시기 : 1990. 8

6. 기술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

가. 계약 방법

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, 제38조  
규정에 의한 <sup>시행</sup> 용역 수행 능력 평가방법에 의함

나. 참가 대상업체

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종합건설 기술용역업체 또는 전문 기술  
용역업체로서 도로 및 공항, 토질 및 기초, 토목 구조의 3개  
분야 공히 등록된 업체

9.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(331-0216-7)로  
문의하시기 바랍니다.